

충청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-15호

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3년 3월 30일

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선발개요(2개 분야, 총 3명)

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임용기간	근무예정부서(근무지역)
송무행정	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(주35시간)	2명	임용일로부터 3년	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(청주)
국내외 투자유치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임용일로부터 3년	충북경제자유구역청(청주)

* 임용기간은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임용예정분야 주요업무

임용예정분야	주요 업무
송무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소송 업무수행(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, 입증자료 검토 등)· 행정심판 심리자료 작성, 현지조사, 재결서 작성 등· 도정현안(시책사업 등) 법률 검토 및 행정업무 법률 자문 및 법령해석· 각종 법령 · 판례 등 법률 검토 및 자문
국내외 투자유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항공우주 ·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투자유치· 국내 · 외 투자유치 전략 · 기획 및 육성 · 지원· 투자유치IR, 대외협력사업, 기타 협약사업 관리 등

* 자세한 주요업무, 필요역량, 전문지식 등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

3. 응시자격

※ 기준일 : 최종시험예정일[면접시험예정일]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【 결 격 사 유 】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 /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- 거주지 및 성별 : 제한 없음
-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국적제한

임용예정분야	국적제한 요건
· 송무행정 분야	○ 국적제한 없음
·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	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(외국인이 아닌 자)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

나. 자격 및 경력요건(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 가능)

임용예정분야	자격 및 경력요건
송무행정	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
국내외 투자유치	<p>◆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<p>※ 실무경력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출자출연기관, 법인, 기업, 연구소 등에서 국·내외 기업 투자유치 관련 기획 및 전략수립, 경영, 마케팅, 영업, 통역·번역 등 관련 근무 경력</p> <p>※ 우대사항 : 영어능통자(토익700점(토익스피킹 레벨6), 토플530점, 텁스625점, 플렉스 625점 이상, 지텔프(Level 2의 65점 이상))</p>

- 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력 중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)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※ '공공기관'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현황(기획재정부 고시)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
- 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반영되며, 각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18. 1. 1. 이후 실시된 시험점수만 인정

4. 근거 법령

-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임용령,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,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,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

5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자기 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평정성적(총점)이 우수한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(동점자 초과합격)

※ 서류전형 심사평정 기준 (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)

1. 자기소개서
2. 직무수행 계획서
3. 임용예정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(경력요건 해당자)

나. 인적성 검사

-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시행
-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충면접 참고자료로 활용
※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 안내

다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(평정요소)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인적성검사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, 평정요소별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로 평가하여 평정성적(총점) 산정
-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(총점)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

6. 시험 일정

- 원서접수 : 2023. 4. 11.(화) ~ 4. 13.(목)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: 2023. 4. 24.(월) ~ 4. 25.(화)
- 면접시험일 : 2023. 5. 2.(화) ~ 5. 3.(수)
※면접 일시,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
- 최종합격자 발표일 : 2023. 5. 8.(월)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(<http://sihum.chungbuk.go.kr>)에 게재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※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본 공고에 따라 이미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음함(추가로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)

7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3. 4. 11.(화) ~ 4. 13.(목) 09:00 ~ 18:00
- 접수처 : 충청북도청 인사혁신과 교육고시팀(본관 1층 101호)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
 - 등기우편 접수 :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 구입) 동봉하여 발송
 - ▶ 주소 : (28515)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본관 101호 인사혁신과 교육고시팀(응시원서 재증)
 - ▶ 우편으로 원서를 발송한 응시자는 마감 기한 내에 전화(043-220-4733, 4735, 4736)로 우편접수 예정임을 고지
 - ▶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**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하며**, 택배 및 콤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
 - ▶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 - 방문접수 : 근무시간(09:00~18:00) 중 위 접수처로 방문 [접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 - ▶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**‘충청북도 수입증지’** 구입·부착 후 제출 (**정부 수입인지** 사용 불가)

◆ 응시수수료

-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: 1만원

- 일반임기제(지방행정주사보) : 7천원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

나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응시자격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서류전형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사본은 시험실 시기관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, 원서접수기간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

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
-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 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
다.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

(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)

구 분	내 용
1.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1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*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방문접수) 농협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수입증지 구입 · 부착 후 제출 - (우편접수)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편통상환 구입 · 동봉 후 발송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
2.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시자격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-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(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)
3.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4 3매 이내로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
4.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4 3매 이내로 작성
5.동의서 각 1부 (별지서식 제5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필 서명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6.자격증 사본 각 1부 : 필수서류(해당자)	<p>《송무행정 응시자 필수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구 분	내 용
6. 경력증명서 1부 (별지서식 제6호- 필요시) : 필수서류(해당자)	<p>《국내외 투자유치 응시자 필수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무기간, 주근무시간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,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행기관 직인,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- 발행기관(회사)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및 증명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)를 첨부하거나, 별지서식(제6호)을 사용하여 제출 - 경력기간(근무기간)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○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. ※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(주40시간)에 비례하여 경력일부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예시]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: $4\text{년} \times (20\text{시간}/40\text{시간}) = 2\text{년}$ 인정 ○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아래의 자료 등 보완서류를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등록증 등) - 폐업회사인 경우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' (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) - 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
7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: 필수서류(해당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위별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○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도 (전문)학사 포함 각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 ○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
8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자에 한함 ○ 응시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가급적 제출을 요함 ※ 경력 검증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○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○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에서 발급 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
※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 으며, 그 외 검증을 위한 서류의 미비, 기재(서명) 누락,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은 서류전형 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. ○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

8. 임용예정일, 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

- 임용 예정일 : 2023년 5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임용기간 : 선발개요 참고(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)
- 보수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(주35시간) (송무행정)	—	55,783천원
일반임기제(지방행정주사보) (국내외 투자유치)	64,776천원	46,006천원

-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

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일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난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

- 시험 전형 결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,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,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외국인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분야	담당부서	연락처	비고
시험절차 등	인사혁신과	043-220-4733	
송무행정	법무혁신담당관	043-220-2332	
국내외투자유치	충북경제자유구역청	043-220-8313	

붙임 1. 직무기술서 각 1부.

2.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(제1호~제6호) 각 1부.
3. 2023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1부.